

2017년 9월 18일 승인

# 도 시 가 스 공 급 규 정

## [경상북도]



영남에너지서비스(주)



서라벌도시가스(주)



대성청정에너지(주)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의무)

제3조(적용)

제4조(용어의 정의)

###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제6조(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제7조(승낙의 의무)

제8조(계약의 준수)

제9조(해약)

제10조(계약소멸후의 관계)

###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공사시행)

제12조(연소기 등의 연결)

제13조(가스계량기)

제13조의2(온압보정장치)

제14조(공사비)

###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5조(검침)

제16조(계량의 단위)

제17조(사용열량의 산정)

제17조의2(온압보정장치에 의한 사용량의 산정)

### 제5장 요금

제18조(요금)

- 제19조(가스요금 용도 구분)
- 제20조(요금의 수납)
- 제21조(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 제22조(10원단위 미만처리)
- 제23조(이의 신청)
- 제24조(요금계산의 정정)
- 제25조(보증금)

## 제6장 공 급

- 제26조(공급가스의 열량 등)
- 제27조(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 제28조(공급중지)
- 제29조(공급중지 등의 해제)

## 제7장 안 전

- 제30조(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 제3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제8장 기 타

- 제32조(문서보관)
- 제33조(사용장소의 출입)

[별표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소비량

[별표2] 시설분담금

[별표3] 가스요금표

[별표4]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별지 제1호 서식] 도시가스공급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도시가스 시설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가스사용 중지(폐지)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가스사용 중지(해제)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합니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의무)** ①회사는 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점검실시·기록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③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고객전담부서(고객봉사실)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 하겠습니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회사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합니다)가 허가한 공급권역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열량”이라 함은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KPa(10,332mmAq) 상태의 건조한 가스 1세제곱미터(m<sup>3</sup>)를 완전연소하여 방출된 총열량(수분잠열 포함)을 말합니다.(이하 “발열량”이라 합니다.)
2. “최고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3. “최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4. “월간가중평균열량”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열량과 공급량을 월간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열량을 말합니다.
5. “기준열량”이라 함은 천연가스열량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천연가스

열량에 상응한 계량기 등급 산정 및 표준소비량 환산에 적용되는 열량을 말합니다.

6. “압력” 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가스공급시설의 끝 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된 계기압력을 말합니다.
  7. “최고압력” 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8. “최저압력” 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9. “가스시설공사” 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 “가스사용자” 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말합니다.
  11. “수요자” 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2. “공급의 중지” 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합니다.
  13. “지역정압기” 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4. “전용정압기” 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5.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합니다.
  16. “응급조치” 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17. “인입배관” 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8. “시설분담금” 이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으로 되며, “경상북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 산정된 분담금을 말합니다.
- 가. “일반시설분담금” 이란 공동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나.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이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공급 시설 접속시점 및 용도 변경시점에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19. “특별공사”라 함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개발제한구역,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포장상태 등으로 압입, 하월, 교량침가 등 관련 특수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 등에서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20. “특수계량기”라 함은 원격검침계량기,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디지털계량기, 온압보정장치 내장형계량기 등 계량기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가장치가 설치된 계량기를 말합니다.
2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22. “폐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인입배관의 도로구간 임의지점을 절단하고 CAP 등으로 용접, 용착 등 마감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23. “해지”라 함은 전출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입배관의 도로구간의 절단없이 가스공급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이나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유선신청의 경우 회사는 추후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

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제6조(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니다. 또한 가스사용 개시 및 사용자 변경시 사용자는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0-282호)”에 의거하여 산정한 별표 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개시 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 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계량기의 검정교체로 등급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초과 시설분담금은 가스사용자에게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소기의 변경으로 등급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가스공급계약(재계약 포함)시 가스의 수급 및 공급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월 사용 예정량이 10만㎥ 이상인 경우 연·월별 사용량에 대하여 회사와 사용자간 상호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7조(승낙의 의무)** ①회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단, 미납요금을 납부한 때에는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8조(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경매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회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가스사용자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날로부터 실제 변경 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상속·법인의 합병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사용계약을 변경하여 가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이전 사용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6.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할계산으로 연간 3회까지 미납원금(부가세 미포함)에 부과합니다.

- 연체료 일할계산 : 연체원금 X 연체일수 X 연체요금(0.24)/365일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집니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또는 온압보정기의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 계량기 교체비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 온압보정기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2. 봉인파손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3배

3.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 동월사용료의 3배

6. 부정시공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단, 전년 동월사용료를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사용료를 월사용료로 하여 적용하며년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의 산정은 가스연소기의 총 최대가스소비량에 의거 산정합니다.

**제9조(해약)** ①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 예정일 15일, 해지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일자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폐지 또는 해지예정일에 폐지 또는 해지하고, 그 폐지일 또는 해지일을 해약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가 그 폐지일 또는 해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하며, 가스사용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철거된 일자를 폐지일 또는 해지일로 합니다.

②가스사용자가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전출하거나 가스사용을 폐지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회사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③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이내에 가스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중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④회사는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회의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약일 10일전까지 고객에게 요금납부를 최고한 후 공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소멸후의 관계)** ①계약기간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사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회사 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의 토지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공사시행)** ①가스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12조(연소기 등의 연결)** ①제11조제1항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변경공사 포함)를 완료한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 및 도면을 작성하여 회사에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44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수요자에게 취하여야 합니다.

②가스사용 기기를 설치(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 (교체를 포함한다.)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 안전점검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도시가스로 연료전환하여 종전 연소기의 열량변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의 서비스기사가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 도시가스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3조(가스계량기)** ①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가스계량기는 회사가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며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 “계량에관한법률” 에 의한 검정유효기간 도래 가정용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고, 가정용 이외의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는 별표 4의 비용을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부과합니다.

④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 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외부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⑤일반계량기 이외의 특수계량기(디지털계량기, 원격식아날로그계량기,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등)를 설치한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회사는 일반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량기 교체 시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원격으로 사용량을 확인하는 설비는 계속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선로 및 원격지시부 등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리드스위치가 부착된 계량기로 회사가 교체하며, 계량기 이외의 원격설비의 연결, 원격지시부지침 초기화 및 유지 보수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특수계량기의 교체비용은 회사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의2(온압보정장치)** ①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가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제고를 위하여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사용량 측정의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28호, 제2009-193호, 제2012-93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온압보정장치 표준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한 가스사용자는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4호)에 의거 유효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온압보정장치가 정기검사 결과 정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철거하여야 합니다.

⑤회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온압보정장치의 유지관리 및 정기검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온압보정장치를 사전통지 없이 설치하거나 고장 등으로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7조 “사용량의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제14조(공사비)** ①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회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0-282호)”에 의거 산정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에 미달하는 지역은 [별표2]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을 사용자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공급의무 이외의 지역 등에서 기존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 가스사용자가 제6조제2항에 의한 시설분담금 외의 추가적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전제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공사시행 전에 공사내역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공급규정 제4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부

담금은 가스사용자와 상호협의 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가 추가 부담을 할 경우 회사는 공사시행전에 공사내역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6.3.8. 신설)

⑤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가 분담하여 설치한 가스공급 시설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을 위하여 전체 가스공급시설의 소유권과 유지보수 등 관리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⑥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비는 회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인입관은 공급규정 제4조제21항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까지로 합니다.

⑦회사는 제14조제3항 단서규정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요자에게 시설분담금 외의 분담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정산하여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시설변경 등으로 공사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징합니다.

⑧공동주택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가스누설 등에 대한 응급조치비용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⑨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⑩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수요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⑩특수구간에 가스공급시설 공사시 문화재 입회비용 등 추가비용 발생시 그 일부를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5조(검침)** ①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검침일자와 요금 납부일자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 1. 1]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합니다.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5. 제1항에서 실시한 자가검침의 확인점검

③가스요금 고지서에는 당월사용량을 포함한 사용량 누계를 표시하여야 하며, 당월사용량은 전월대비 사용량 누계의 차이를 적용합니다.

④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한 계량기에 의한 지침을 활용하여 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가스계량기의 지침과 원격검침 지시부의 지침이 다를 경우에는 가스계량기의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이 경우 요금의 정산은 최근 6개월 평균요금단가를 적용합니다.

**제16조(계량의 단위)**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m<sup>3</sup>)로 하며 검침시 소수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합니다.

**제17조(사용열량)의 산정** ①회사는 제2항 또는 제17조의2의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용량(m<sup>3</sup>)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지하는 해당기간의 월간가중평균열량(MJ/Nm<sup>3</sup>)을 곱하여 사용열량(MJ)을 산정합니다.

②회사는 제26조제1항3호에 의한 압력범위 이내에서 공급되는 가스사용자중 별도의 보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매월 가스계량기의 검침량에 도지사가 고시하는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당해월분의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 \text{사용량} = \text{검침량(m}^3\text{)} \times \text{온압보정계수}$$

③회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 또는 자가검침 미이행 등의 사유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또는 월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시에 정산합니다.

⑤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가스사용자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거나 별도의 압력, 온도 등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합니다.

$$V = \frac{V1 \times (101,325 + P)}{101,325 + 980.7}$$

V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m<sup>3</sup>)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Pa)

V1=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sup>3</sup>)

$$V = \frac{V1 \times (10,332 + P)}{10,332 + 100}$$

V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m<sup>3</sup>)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mmAq)  
V1=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sup>3</sup>)

**제17조의2** (온압보정장치에 의한 사용량의 산정) ①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한 가스사용자는 온압보정장치에서 산출된 보정값으로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②제1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없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거나, 고장 또는 오작동 등으로 보정값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7조의 사용량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하여 고지합니다.(2016.3.8. 신설)

③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결과 정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가스사용자는 제17조의 사용량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하여 고지합니다.

## 제5장 요 금

**제18조(요금)** ①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도지사가 승인한 [별표3]의 요금표를 적용합니다.

②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98.8.1 시행)에 따라 원료비 변동에 의한

도매요금 변동가격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는 소비자 요금에 자동연동조정 시행합니다.

③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타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④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회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요금표와 요금변동 유무를 기재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가스요금 조정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 사용량을 요금 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⑥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기준”에 따릅니다.

**제19조(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개별난방·중앙난방·열전용설비), 업무난방용, 일반영업용(1·2), 냉난방공조용, 산업용(I·II·III·IV·V), 열전용설비용(산업용), 연료전지용, 열병합용(1·2) 및 수송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단일 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구분에 관한 특별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용용도를 적용합니다.

1.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개별난방·중앙난방), 열전용설비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2.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타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일반영업용1 요금은 1호, 2호 및 4호 내지 9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4. 일반영업용2 요금은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5. 냉난방공조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공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월은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가스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에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는 하절기만 냉난방공조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6.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용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장소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가스는 열전용설비용(산업용), 또는 열병합용 1, 2를 적용합니다.

7. 열병합용1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8. 열병합용2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3호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은 열병합용1을 적용합니다.
9.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0.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11. 연료전지 요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제20조(요금의 수납)** ①회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열량요금 사용량(MJ)에 따라 도지사가 승인한 [별표3]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회사 소정의 납입고지서(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합니다.

②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도의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거나, 익월 납입고지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③회사는 1인의 가스사용자가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주 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주택용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합니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중 5일 이상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한 경우
2. 최초공급, 해약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로 사용일수가 월중 15일에 미달하는 경우

- ⑥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 또는 경감합니다.
- ⑦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요금납입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납입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①요금은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소정 납기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공급중지, 폐지, 부도 또는 연2회 이상 미납한적이 있는 가스사용자는 월4회 분할 검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또는 기업 파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하여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도지사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납기를 따로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④가스사용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이나 장소 등에 납부 기한내에 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가스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 납부는 주택용 요금과 계량기 기준 G2.5(4등급) 이하 주택용 외 요금 및 수송용 요금에 적용합니다.

⑥도지사는 신용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공급비용 산정시 반영합니다.

**제22조(10원단위 미만처리)**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합니다.

**제23조(이의 신청)** ①가스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결정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④가스사용자가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스사용자가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계산은 제25조제6항을 준용합니다.

**제24조(요금계산의 정정)** 회사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동월 사용료의 범위내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월 사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월평균사용량 범위내에서 회사와 가스사용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제25조(보증금)**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2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경매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6. 가스보일러의 시험가동 및 동파방지를 위한 임시 가스사용자
7. 제3항에 의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가스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연체한 경우

② 제1항의 “월 사용예정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 사용량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6호 가목(월 사용예정량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월 사용예정량. 단, 업종의 특성에 따라 월사용예정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업종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동기간중 1회이상 연체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가스요금 징수 사고율이 높아 채납의 우려가 있는 업종 등 회사가 특별히 대손상각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3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예치기간은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회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⑤회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중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합니다.

⑥보증금(현금 예치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시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1. 보증기간이 1년 이상 확정된 경우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
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 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 후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 제16장 공 급

**제26조(공급가스의 열량 등)** ①회사가 공급하는 열량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 열량으로 하며 압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 :  $42.28\sim 44.37\text{MJ}/\text{Nm}^3$  ( $10,100\sim 10,600\text{kcal}/\text{Nm}^3$ )

환산기준 :  $1\text{cal}=4.186\text{J}$  적용(동 규정내 동일기준 적용)

다만, 상기 열량범위내에서 해당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은 한국가스공사 전체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의  $\pm 2\%$ 이내이어야 한다.

2. 성분 : 천연가스(메탄 85%이상)
3. 압력(가정용) : 최고압력 ……  $2,451.7\text{Pa}$  ( $250\text{mmAq}$ )  
최저압력 ……  $980.7\text{Pa}$  ( $100\text{mmAq}$ )

다만, 회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도시가스 품질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호(2016.1.21)에 따릅니다. 다만, 천연가스의 웨버지수는 천연가스공급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회사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공급이 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제27조(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굴착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
5.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할 때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보도기관을 통해 공고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대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회사가 공급의 제한이나 중지 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및 중지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결과 가스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8조(공급중지)**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정수금(보증금, 위약금,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등)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작업(계량기교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제8조의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한 때
5. 가스사용자의 토지내에 있는 회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당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중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만기 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에 의한 정상적인 공급중지(계량기전단밸브 차단)가 불가능하고 가스사용자에게 절차 및 제반비용이 사전 통지된 경우 회사는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행위(배관절단 등)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사전 통지된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제29조(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회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③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급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받지 아니합니다.

## 제7장 안 전

- 제30조(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①가스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퓨즈콕을 잠그고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④가스사용자는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등의 행위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⑤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불합격시 시설개선기간이 부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할 경우 재검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⑥고객은 전출·입시 회사에 통보하여 배관의 안전한 마감조치 및 호스 연결작업을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입주시 발생하는 비용중 연결에 소요되는 부속재료비만 고객이 부담(출장비, 안전점검비 등은 제외)하고 전출시 발생하는 철거비 등의 제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단 설치후 회사에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 가스검침 관계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개정 2015. 1. 1]

**제3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가 도지사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합니다.

## 제8장 기 타

**제32조(문서보관)** ①회사는 법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소정기간 기록을 보존합니다.

②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서류열람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겠습니다.

**제33조(사용장소의 출입)** 회사는 검침·점검·조사·채납관리, 비상상황발생·응급조치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직원 및 회사의 위탁을 받은 회사의 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사원증명서(사원증) 또는 신분증명서(신분증)를 제시해야 합니다.

##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1988년 10월 5일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 (경과조치)**

- ①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집단공급 사업허가를 받아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기 사용하고 있는 저장시설 및 기계시설의 기기와 탱크는 시설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감정을 실시 산출된 금액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또는 가스요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동시설이 건설주 또는 가스사업자 소유로 있을 때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② 도시가스 공급개시로 인하여 기 설치된 공급시설의 개수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합니다.

다만, 연소기구의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부 칙

1. 승인일 : 이 규정은 1988년 12월 5일 승인한 것입니다.
2. 시행일 : 이 규정은 1988년 11월 2일부터 소급 시행합니다.

## 부 칙

1. 승인일 : 이 규정은 1992년 11월 18일 승인한 것입니다.
2. 시행일 : 1992. 11. 18



## 부 칙

1. 승인일 : 이 규정은 1993년 3월 25일 승인한 것입니다.
2. 시행일 : 1993. 02. 25
3. (경과조치) 이 규정 변경승인 이전에 수용가로부터 기 징수한 용구손료는 향후 계량기 교체시 수용가 별로 이를 정산합니다

## 부 칙

1. 승인일 : 이 규정은 1995년 9월 26일 승인한 것입니다.
2. 시행일 : 이 규정은 199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1997년 6월 2일 승인한 것입니다.
-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4월 23일 이후 LNG공급분 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1997년 12월 27일 승인한 것입니다.
-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2월 20일부터 소급 시행합니다.

## 부 칙

-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24일 승인한 것입니다.
-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7일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5일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5일 승인한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 회사와 수요자간 계약된 수탁공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7일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9일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30일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24일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9일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9일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30일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4일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제1항제1호의 열량은 2015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1. 열량 :  $41.02\sim 44.37\text{MJ/Nm}^3$  ( $9,800\sim 10,600\text{kcal/Nm}^3$ )

##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0일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2일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2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9일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0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8일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1일 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소비량 (제5조제2항 관련)

등 급	2	3	4	5	7	10	16	25	40
표준소비량 (m <sup>3</sup> /h)	2	3	4	5	7	10	16	25	40

- 1시간당 표준사용량이 41m<sup>3</sup> 이상인 경우 다음의 표준가스소비량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합니다.
- 표준소비량(m<sup>3</sup>/h)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은 [42.47MJ/Nm<sup>3</sup>\(10,144kcal/Nm<sup>3</sup>\)](#)로 한다.

1) 주택용 수요가

- 취사전용 수요가 : 2.0m<sup>3</sup>/h
- 취사, 난방 겸용 수요가 : 취사기구, 난방기구 및 기타 가스소비기기의 총 1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

2) 주택용외 수요가

보일러 등 각 사용시설의 총 1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

## [별표2] 시설분담금 (제6조제2항 관련)

### 1. 일반시설분담금

가. 납부대상 :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

나. 기준단가 : 27,780(원/㎥) (단위당 표준가스소비량 기준)

다. 금 액 : 기준단가(원/㎥)×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hr)

- 40㎥/hr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별표1]의 계량기 등급을 적용합니다.

(※ 단,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 높은 등급의 계량기 설치시 표준가스 소비량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적용하며,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합니다.)

### 2. 취사전용시설분담금

가. 납부대상 : 취사전용가스사용자

나. 부담액 산정식 : 기준단가(원/㎥)×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hr)

다. 기준단가 : 필요시 산출

### 3.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가. 납부대상 : 공급배관 100m 당 가정난방용 기준 45세대 이하인 가스사용자

- 100m 당 가스사용자의 표준가스소비량 합계가 180㎥/h 이하인 경우로 가정난방용 이외의 가스사용자는 가정난방용 표준가스사용량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나. 금 액 : 기준단가(원/㎥)×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h)

다. 기준단가(원/㎥) : [(표준투자비×배관연장거리×적용률)-(시설분담금회수액+요금상 감가상각비회수액)]÷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 표준투자비는 365,694원/m, 적용률은 40%로 적용합니다.

- 시설분담금회수액은 제1항에 따른 총 가스사용자의 일반시설분담금을 적용하며, 요금상 감가상각비회수액은 213,580원/세대를 적용합니다.

라. 가스 사용자의 요청으로 특별공사 시행 시 수요자와 상호 협의하여 추가 부담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공사 완료 후 정산하여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개정 2015. 1. 1]

### 4.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5.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경상북도 고시 제2010-282호)에 따릅니다.

[참조] 일반시설분담금 및 세대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일반시설분담금 기준

(단위:원, 부가세 별도)

표준 소비량 (m <sup>3</sup> /h)	2.5	4	6	10	16	25	40
분담금	69,450	111,120	166,680	277,800	444,480	694,500	1,111,200
비 고 (모델)	G-1.6	G-2.5	G-4	G-6	G-10	G-16	G-25

■ 세대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주택난방용(4등급) 기준>

[단위:원/세대]

세대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	10세대
부담금	14,303,050	6,989,170	4,551,210	3,332,230	2,600,840	2,113,250	1,764,970	1,503,760	1,300,590	1,138,060
세대수	11세대	12세대	13세대	14세대	15세대	16세대	17세대	18세대	19세대	20세대
부담금	1,005,080	894,270	800,500	720,130	650,470	589,520	535,740	487,940	445,170	406,680
세대수	21세대	22세대	23세대	24세대	25세대	26세대	27세대	28세대	29세대	30세대
부담금	371,850	340,180	311,280	284,780	260,400	237,890	217,060	197,700	179,690	162,880
세대수	31세대	32세대	33세대	34세대	35세대	36세대	37세대	38세대	39세대	40세대
부담금	147,150	132,400	118,550	105,520	93,220	81,610	70,630	60,230	50,360	40,980
세대수	41세대	42세대	43세대	44세대	45세대					
부담금	32,060	23,570	15,470	7,740	350					

- 비 고

1. 세대수 : 동시에 가스공급을 신청한 세대수
2. 부담금 : 공급배관 100m 건설 시 1세대 당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별표3]가스요금표 (제18조제1항 관련)

1. 제1권역(포항권역) - 영남에너지서비스(주)포항

구 분		소비자 요금		비고
		기본요금 (원/세대)	사용량단가 (원/MJ)	
주 택 용	취 사 용	750	도매요금+공급비용	
	개별난방	750	도매요금+공급비용	
	중앙난방	-	도매요금+공급비용	
업무난방용		-	도매요금+공급비용	
일반용	영업1	-	도매요금+공급비용	
	영업2	-	도매요금+공급비용	
냉난방공조용 (하절기)		-	도매요금+공급비용	
산업용	I	-	도매요금+공급비용	
	II	-	도매요금+공급비용	
	III	-	도매요금+공급비용	
	IV	-	도매요금+공급비용	
	V	-	도매요금+공급비용	
열전용설비용		-	도매요금+공급비용	
열병합용		-	도매요금+공급비용	
수송용요금		-	도매요금+공급비용	

< 비 고 >

- 산업용 II는 월사용량 2,146만MJ초과분에 적용
- 산업용 III는 월사용량 6,438만MJ초과분에 적용
- 산업용 IV는 월사용량 10,730만MJ초과분에 적용
- 산업용 V는 월사용량 15,022만MJ초과분에 적용
- 냉난방공조용(동절기, 기타월)은 업무난방용 소매요금 적용
- 주택용의 경우 월 522.48MJ까지는 취사용, 522.48MJ 초과는 난방용 적용
-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구분은 천연가스 공급규정 준용



2. 제2권역(구미권역) - 영남에너지서비스(주)구미

구 분		소비자 요금		비고
		기본요금 (원/세대)	사용량단가 (원/MJ)	
주 택 용	취 사 용	750	도매요금+공급비용	
	개별난방	750	도매요금+공급비용	
	중앙난방	-	도매요금+공급비용	
	열전용설비	-	도매요금+공급비용	
업무난방용		-	도매요금+공급비용	
일반용	영업1	-	도매요금+공급비용	
	영업2	-	도매요금+공급비용	
냉난방공조용 (하절기)		-	도매요금+공급비용	
산업용	I	-	도매요금+공급비용	
	II	-	도매요금+공급비용	
	III	-	도매요금+공급비용	
	IV	-	도매요금+공급비용	
	V	-	도매요금+공급비용	
열전용 설비용 (산업용)	I	-	도매요금+공급비용	
	II	-	도매요금+공급비용	
	III	-	도매요금+공급비용	
	IV	-	도매요금+공급비용	
	V	-	도매요금+공급비용	
연료전지용(100kW이상)		-	도매요금+공급비용	
열병합용	1	-	도매요금+공급비용	
	2	-	도매요금+공급비용	
수송용요금		-	도매요금+공급비용	

< 비 고 >

- 산업용, 열전용설비용 II 는 월사용량 3,219만MJ 초과분에 적용
- 산업용, 열전용설비용 III 는 월사용량 4,292만MJ 초과분에 적용
- 산업용, 열전용설비용 IV 는 월사용량 6,438만MJ 초과분에 적용
- 산업용, 열전용설비용 V 는 월사용량 8,584만MJ 초과분에 적용
- 냉난방공조용(동절기, 기타월)은 업무난방용 소매요금 적용
- 주택용의 경우 월 522.48MJ까지는 취사용, 522.48MJ 초과는 난방용 적용
-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구분은 천연가스 공급규정 준용

3. 제3권역(경주권역) - 서라벌도시가스(주)

구 분		소비자 요금		비고
		기본요금 (원/세대)	사용량단가 (원/MJ)	
주 택 용	취 사 용	750	도매요금 + 공급비용	
	개별난방	750	도매요금 + 공급비용	
	중앙난방	-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업무난방용		-	도매요금 + 공급비용	
일 반 용	영업1	-	도매요금 + 공급비용	
	영업2	-	도매요금 + 공급비용	
냉난방공조용		-	도매요금 + 공급비용	
산 업 용	I	-	도매요금 + 공급비용	
	II	-	도매요금 + 공급비용	
	III	-	도매요금 + 공급비용	
	IV	-	도매요금 + 공급비용	
수송용요금		-	도매요금 + 공급비용	

< 비 고 >

- 산업용 II는 월사용량 2,177만MJ 초과분에 적용  
산업용 III는 월사용량 3,483만MJ 초과분에 적용  
산업용 IV는 월사용량 5,660만MJ 초과분에 적용
- 냉난방공조용(동절기, 기타월)은 업무난방용 소매요금 적용
- 주택용의 경우 월 522.48MJ까지는 취사용, 522.48MJ 초과는 난방용 적용
-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구분은 천연가스 공급규정 준용

4. 제4권역(안동권역) - 대성청정에너지(주)

구 분		소비자 요금		비고
		기본요금 (원/세대)	사용량단가 (원/MJ)	
주 택 용	취 사 용	750	도매요금 + 공급비용	
	개별난방	750	도매요금 + 공급비용	
	중앙난방	-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업무난방		-	도매요금 + 공급비용	
일 반 용	영업1	-	도매요금 + 공급비용	
	영업2	-	도매요금 + 공급비용	
냉방용		-	도매요금 + 공급비용	
산 업 용	I	-	도매요금 + 공급비용	
	II	-	도매요금 + 공급비용	

< 비 고 >

- 산업용 II 는 월사용량 6,531만MJ 이상에 적용
- 냉난방공조용(동절기, 기타월)은 업무난방용 소매요금 적용
- 주택용의 경우 월 522.48MJ까지는 취사용, 522.48MJ 초과는 난방용 적용
-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구분은 천연가스 공급규정 준용

[별표4]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제13조제3항 관련)

(단위 : 원/월, 부가세 별도)

계량기등급	2등급	2.5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금 액	240	250	260	460	520	580	630
계량기등급	10등급	16등급	25등급	40등급	40등급 초과		
금 액	770	1,290	1,760	2,870	당해 설치 계량기에 따라 별도 계상		

○ 취사용, 개별난방은 교체비용 제외



## 가. 공급신청서 작성요령

- ① 상호(명칭) : 건물명 또는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기입
- ② 성명(대표자) : 신청인인 개인일 경우는 소유자 성명, 법인일 경우는 대표자 성명 기입
- ③ 전화번호 : 사용자의 집전화 및 휴대전화 기입
- ④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신청인인 개인일 경우는 생년월일, 법인일 경우는 법인번호 기입
- ⑤ 소재지 : 가스공급을 받을 곳의 주소 기입
- ⑥ 사용용도 :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시설의 사용 용도 선택
- ⑦ 계량기 : 표준가스소비량에 대한 계량기 부착 등급 기입

## 나. 고객 부담금

- ① 시설분담금이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 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으로 구분 됩니다.
  - 1) 일반시설분담금이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 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이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 및 용도 변경시점에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 3)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이란 수요가의 공급요청으로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 ② 공사부담금
  - 1) 공사부담금 : 고객이 점유하거나 소유하는 토지경계 밖의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 등에 따른 공사비는 회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과 회사와 합의한 경우 공급관 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 할 수 있으며 공사비는 회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 2) 인입분담금 :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에서 분기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에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사용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합니다.
  - 3) 공사부담금은 회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용자가 원할 경우 공사비 산출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 다. 고객 부담금 산출내역(별지 첨부)

## 라. 도시가스 공급계약 조건

- ①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공급(변경) 신청하며 별도의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공급계약 체결일로 합니다.
- ③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에 의한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를 인지하고 있으며, 인입공사비의 50%를 공사착공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④ 인입배관 등 고객이 부담한 금액의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을 위하여 유지보수 등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 ⑤ 도시가스 공급대상 공고 외 지역의 경우 공급신청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며, 도시가스 배관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 시에는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⑥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시공을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사의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후, 시공전 사전협의를 통하여 시공의 안전성과 공급의 안정성을 상호 확보하여야 합니다.
- ⑦ LPG 체적거래 수요자는 LPG공급자와 사전협의 후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14조 제2항, 제3항)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규정 및 공급계약 조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













